

민간경비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방안*

The Study on the Private Security Employe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박 동 균**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민간경비의 위기관리와 교육훈련
- III. 민간경비원 위기관리 교육훈련 시스템 실태와 개선방안
- IV. 결 론

<요 약>

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법,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이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법,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주제어 : 민간경비, 위기관리, 교육훈련, 신입교육, 경비지도사

* 본 연구는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 지원(과제번호 2007-901-1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I. 서 론

우리나라는 과거 태풍 루사와 매미, 에위니아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난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상주 MBC 가요콘서트 참사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재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위험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자연적인 이유든 인위적인 이유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또한 국가 전체의 행정을 위기상황에 빠뜨리게 하는 혼란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인근 해안으로 확산되며, 사상 최악의 해양사고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의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만도 수 조원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사회는 교통,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순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쇄화되고 있어 인적 재난과 천재지변을 수반하고 있다.

현대 도시가 고도화하고, 중심부에서 고밀도화 및 다기능화 함에 따라서 각종 재난에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시의 위기관리 역량제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위기관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지역주민 모두의 책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위기관리 영역에도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부터 주말에 각종 여가활동을 즐기는 이유로 인하여 집과 사무실을 장기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 및 화재, 재난에 대비하여 민간경비업체와 시큐리티 계약체결이 늘고 있다.

현대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 각종 위험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경찰 및 소방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가가 아무리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개인은 저마다 다양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경비는 사적인 차원에서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최선우, 2008 : 20).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민간경비 업체가 단순히 방범기능만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 이러한 현상은 학계에서도 민간경비 산업의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미함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의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위기관리 분야는 주로 소방학자나 행정학자들의 연구영역으로 치부하는 연구경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박동균, 2005 : 105).

는 민간경비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비 서비스에는 화재나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방지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박동균, 2004 : 175).

이른 바 가정 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 HA(Home Automation)은 전자화 주택으로서 방법, 화재, 자동감기 기능을 갖추고 전화로 밥을 지고,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HA 시스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는 방법, 화재 및 가스누출 등의 안전에 관련된 상태를 감지하여 옥내 혹은 옥외로 경보를 울려 주고, 부재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원격지 전화번호로 비상상태를 통보해 주는 기능을 들 수 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경찰이나 경비회사, 구급차 등을 부를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김정환·서진석, 2003 : 184, 박동균, 2004 : 175).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토탈 시큐리티 산업에 근무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특히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신입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 및 직무교육과 함께 경비지도사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재 경비업법상 신입경비원들에 대한 교육 및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의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표된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백서 등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하는 기술적 연구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주로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 민간경비의 위기관리와 교육훈련

1. 위기관리의 개념

위기관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욱, 2004 : 81). 먼저 Fearn-Banks(1996)는 위기관리는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의 위협성과 불안요인을 감소하고 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Littlejohn(1983)은 비상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계획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다각적인 조직 차원의 노력을 위기관리로 보았다. 따라서 조직에 미칠 위기 상황을 찾아내고, 예방하며, 발생 시의 위기 극복을 총괄하는 장기적인 조직 차원의 노력이 위기관리이다(이재은,

2007). Coombs(1999)는 위기관리를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위기에 의해서 야기되는 실제적인 피해를 줄이는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위기관리가 네 가지 요소, 즉 예방, 준비, 실행,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관리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기의 모든 단계에 대응하는 것이다.

위기관리는 또한 조직 전체 차원의 고려들, 즉 조직 문화, 조직 구조 등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직의 활동을 의미한다(김영옥, 2004 : 81-82). 그리고 Giuffrida(1985 : 2)와 Cigler(1988 : 5)는 위기관리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일상화된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Pickett & Block(1991 : 263)에서는 위기관리를 ‘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이미 발생한 위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위기관리는 “각종의 재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완화(mitigation), 대비계획(planning), 응급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Petak, 1985 : 3).

2. 민간경비의 위기관리 역할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과 대상은 국가의 경제력, 사회문화적 요소, 범죄발생 등에 따라서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민간경비 산업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그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민간경비업이 개인 및 기업의 시설과 재산의 보호에서 손실방지(loss prevention), 컴퓨터보안(computer security),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ion), 개인의 정보조사(background check) 등에 이르기까지 방법, 수사, 경비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경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찰을 능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공경비 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는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단체, 기업”을 말한다(Bilek, Lejins, Meter, 1997 : 3).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은 공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을 구현하는 21세기 유망 안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는

최근에 이르러 방범 기능에서 방재와 방화 등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크게 방범, 방재, 방화의 3대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소방, 보험 등은 ‘사고 수습’ 업무에 중점을 두고, 민간경비 산업은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일반 제조업은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리콜이 가능하지만 민간경비 산업의 경우, 서비스의 실패는 결국 사고발생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리콜의 존재의의가 없어진다. 민간경비 산업은 <그림 2-1>과 같이, 고객우위적 서비스 산업에 해당된다(박동균, 2005 : 111).

<그림 2-1>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의 유형

많음 (필수) ↑ 수요측면 ↓ 적음 (선택)	기업우위적 서비스상품 전기, 가스, 지하철, 병원 등	경쟁우위적 서비스 상품 전화, 휴대폰, 패스트푸드
	특수서비스 상품 병원, 항공사, 컨설팅 등	고객우위적 서비스 상품 민간경비산업, 용역업
	경쟁자 적음 ← 공급측면 → 경쟁자 많음	

자료 : 장기학, 2001 : 45.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 발전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른 경비 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범죄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민간경비의 서비스 형태로는 개인의 안전관리에서부터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경비·보안기기의 생산, 경비자문 및 이벤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는 공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을 구현하는 21세기 안전산업이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는 불법적인 외부의 각종 인위적인 위협 또는 자연적인 위협으로부터 시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생명 또는 재산 등을 방어 및 보호할 목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경비를 포함한 안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업이다. 즉, 현대 민간경비의 주요 기능은 방범, 방재, 방화 등 통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매년 높은 이직률로 인한 신규채용의 증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민간경비 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경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자질시비, 낮은 처우 등은 민간경비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

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시큐리티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박동균, 2005 : 111-112).

3.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민간경비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비현장에 투입되는 민간경비원의 인사관리는 민간경비 서비스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간경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최선우, 2008 : 209). 그러나 민간경비 산업에 우수한 인적 자원이 신규 채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경비원의 채용 및 선발과정 이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와 가치관을 교육시켜야 한다(박동균·배철효, 2007 : 125).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위험사회에서 민간경비원은 각종 범죄 예방, 재난 예방, 화재 예방이라는 토탈 시큐리티의 준공공적 성격을 띠는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부합하는 전문성 있는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민간경비 수요에 대응하고, 그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원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민간경비 조직의 목표는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직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달성된다. 성공적인 직무수행은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유민봉, 2005 : 218).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은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획된 활동이다.

교육훈련의 직접적인 목적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종업원이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킴으로서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교육 참가자들 각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제공 기업과 교육훈련 참가자 모두에게 스스로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개인은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 능력을 개발 할 수 있으며, 조직은 생산성 및 유효성의 향상, 종업원 능력개발로 인한 인력 배치의 유연성 확보, 다양한 환경변화의 적응, 조직문화의 형성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훈련은 조직 구성원의 기술, 지식, 태도 등의 능력을 변화시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고,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직 구

성원에게 필요한 능력을 제공한다(강영길,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민간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근본적 목적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정립하여 경비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교육훈련은 훈련수요의 충족에 의하여 경비조직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민간경비업무의 능률적인 직무수행과 낭비 배제 및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을 받는 개인이 만족스러운 경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고, 그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John L. Sullivan, 1997 : 238-239).

첫째, 민간경비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과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둘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다. 셋째, 직무습득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 넷째, 경비원의 사기 제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충성심을 고취하고, 경력발전을 기할 수 있다(박동균·배철효, 2007 : 125).

그러나 근본적으로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여 근무의욕의 향상은 물론 경비근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민간경비 조직의 신축성을 확보하여 민간경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김경태, 2006 : 4).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소방 등에 관한 업무는 정부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교육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습득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실제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실시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만 고유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훈련은 일반적인 공무원 적응훈련이나 민간기업의 적응훈련 보다는 대부분이 장기적이며, 전문적인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중앙경찰학교나 소방학교 등이 그 대표적인 교육기관 사례이다(강성철 외, 2005 : 29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민간경비 업무도 경찰이나 소방과 같이 다른 일반 기업체와는 다른 안전업무 영역이므로 신입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박동균·배철효, 2007 : 125).

전반적으로 민간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입문단계 또는 지속적인 훈련 등이다. 입문단계 또는 최초 입직 단계에서의 접근 훈련은 어떠한 민간경비원이나 피용자로서 관련 직업에 단계적으로 끌어 들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Wilson, 1997 : 298). 확실히 견습단계에서의 형식적인 훈련은 그들에게 모든 능력을 대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적이고 공식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시도해야 하며, 그들이 가진 특성과 능력에 그들이 배운 무언가를 도입해야 한다(임준태, 2005 : 397).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갖는 기대효과는 크게 조직차원, 구성원 개인 차원, 대인관계 내부집단 정책실행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조직 차원의 효과는 인재육성을 위한 기술축적으로서 수익성 제고 및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향상 시킨다. 두 번째로, 구성원 개인 차원의 효과는 자기 개발의 욕구 충족을 통한 동기유발로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도와주며, 자기발전과 확신을 고무하고 성취시킨다. 끝으로 대인관계 내부집단 정책실행 차원의 효과는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통한 조직협력으로서 집단과 개인의 대화를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킨다(강영길, 2008).

III. 민간경비원 위기관리 교육훈련 시스템의 실태 및 개선방안

1. 신임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있는데,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일반경비원 교육훈련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입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반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28시간 이상의 신입교육과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록 하여야 하며,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신입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는 근무 배치후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과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신입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7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4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18시간)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기법을 포함한다)	3
기타(3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3
계		28

자료 : 경비업법시행규칙 [별표 2]

2)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

- 2) 1.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근무 배치 전에 88시간 이상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69시간)	정신교육	2
	테러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계 요령	3
	예절교육	2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타(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계		88

자료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우리나라는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높은 이직률로 인한 신규채용의 증가, 경비수요의 다양화, 경비수요의 다양화, 기계경비의 활성화, 특수경비 제도의 도입 등 민간경비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민간경비 업무도 단순업무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반경비원이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훈련제도로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민간경비 산업의 변화에 부응하고 고객들에게 양질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경비 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이상원, 2005 : 123).

민간경비의 계약의뢰자인 고객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안 서비스를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민간경비원들이다. 이들의 위기관리 능력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관리라는 직무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자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직무분야로서 이는 위기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기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현행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르면, <표 3-1>과 <표 3-2>와 같이 입교식 및 수료 평가식의 3~4시간을 제외하면 일반경비원들은 총 25시간, 특수경비원들은 84시간으로 매우 형식적인 주입식 강의로 평가된다.

따라서, 경비원의 교육시 실무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적실성있는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즉, 현행 경비업법상 시행되고 있는 신입교육시 위기관리에 대한 교육과목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교육시간을 보다 확대함과 동시에 주입식 강의실 교육을 탈피한 현장실습 등 실무위주의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1)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 교육의 개선

경비지도사는 민간경비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경비수준의 향상과 원활한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협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현재 민간경비 분야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공인자격이라는 점에서 경비원의 지위와 자질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임명순, 2006 : 367).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 민간경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들은 그 동안 매우 낮은 교육훈련을 받아왔고, 최저수준의 임금과 낮은 승진 기회 등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인력이 그 주종을 이루었다(강길훈, 2005 : 99). 특수경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청원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오윤성, 2007 : 57).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여기서,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하고,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경비지도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44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때 경찰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 한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업자는 규정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기계경비지도사에 한해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표 3-3> 현행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과 시간

구 분	과 목	시 간	
공통 교육 (20시간)	경비업법	4	
	청원경찰법	2	
	법학개론	2	
	경비실기(봉술 및 호신술)	4	
	교육기법	4	
	입교식·평가수수료식	4	
실습교육 (24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5
		○호송경비	5
		○신변보호	5
		○기계경비개론	2
		○일반경비현장실습	7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7
	○기계경비기획및설계	7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7	
계		44	

자료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현재 우리나라 민간경비와 관련된 유일한 국가 공인자격증인 경비지도사 교육제도가 지나치게 방법기능에만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위기관리 기능에 걸맞게 화재나 가스폭발사고 등 각종 재난대비를 포함하는 위기관리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 후 실시되는 44시간의 교육 등을 보다 적실성 있게 개편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로서 실제로 경비현장에서 경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목을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기본교육에는 방재나 방화 등 위기관리 관련 과목은 전혀 없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방화나 방재, 응급처치 등 안전관리 내지는 위기관리 관련 과목을 개발하여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 신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지도사의 주요 업무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다. 그러므로, 경비지도사의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의 기본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경비지도사는 직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입법상의 미비점이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경비기법 및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과 경비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현업에 종사하는 경비지도사는 최소한 1년에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무교육은 한국경비협회가 주관이 되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비지도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대한 학계, 업계,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가 함께 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경비지도사 교육훈련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박동균, 2004 : 187).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소방안전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대다수의 협회들이 협회 자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각종 관련 교육 즉, 신입교육, 보수교육, 실무수습, 연수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경비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임명순, 2006 : 374).

아울러 경찰청과 한국경비협회와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주최하여 민간경비 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이나 미국 등 시큐리티 산업이나 위기관리의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경호경비학회 또는 한국민간경비학회, 대학, 민간경비 산업체, 경찰청 등 산·학·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을 자주 개최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IV. 결 론

한국 사회에서의 각종 위기상황의 발생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띠며 나타나고 있다. 즉, 서구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는 위기는 근대 산업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생활안전의 위협, 신종 범죄 등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화에 수반되는 재난과 더불어 근대적 물질문명과 전근대적 의식의 결합을 통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

현대 도시가 고도화하고, 중심부에서 고밀도화 및 다기능화 함에 따라서 각종 재난에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상시의 위기관리 역량제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위기관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지역주민 모두의 책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위기관리 영역에도 민간 부문과 공적 부분간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이나 군대 등과 같은 공경비와 함께 국가 안전의 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으로 국가안전의 중요한 틀로 정착되어야 한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범,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털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신입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 및 직무교육과 함께 경비지도사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경비업법상 신입경비원들에 대한 교육 및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민간경비원 교육훈련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신입 경비원들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의 신입교육과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현재 민간경비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교육훈련을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 및 시간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비지도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신설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경비지도사를 양성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길훈(2005).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6 : 93-124.
- 강영길(2008).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호학박사 학위논문.
- 김경태(2006).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3(1), 1-17.
- 김정환·서진석(2003). 『한국경비산업발전사(I)』, 서울 : 백산출판사.
- 박동균(2004).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 『한국민간 경비 학회보』 3, 173-192.
- 박동균(2005). 위협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경호경비연구』 10, 103-126.
- 박동균·배철호(2007). 일반경비원 신입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분석과 함의 -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117-148.
- 오운성(2007).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전문화 방안 -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 31-62.
- 유민봉(2005).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 이상원(2005).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89-132.
- 이상철·김태민(2004).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8, 281-308.
- 임명순(2006). 민간경비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359-379.
- 임준태(2003). 독일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 113-160.
- 장기학(2001).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역할 재인식, 『제1회 한국경비 지도사 협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경비지도사협회.
- 최선우(2008). 『민간경비론』, 서울 : 진영사.
- Arthur J. Bilek, Peter P. Lejins, Clifford W. Van Meter.(1997), *Private Security*, Anderson Publishing co.
- Cigler, Beverly A.(1988). "Emergency Manage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Michael T. Charles & John Choon K. Kim (ed.). *Crisis Management : A Casebook*.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 Publisher.

- Coombs, W. T.(1999).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Thousand Oaks, CA : Sage.
- Drabek, Thomas E.(1985). “Managing the Emergency Respon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pecial issue) 45. 85-92.
- Fearn-Banks, K.(1996). *Crisis Communications : A Casebook Approach*.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Giuffrida, Louis O.(1985). FEMA : Its Mission, Its Partn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 2.
- Godschalk, David R. & David J. Brower.(1985). “Mitigation Strategies and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 64-71.
- Kreps, Gary A.(1991), “Organizing for Emergency Management.” in Thomas E. Drabek & Gerard J. Hoetmer(eds). *Emergency Management :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 C. :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 Littlejohn, R. F.(1983). *Crisis Management : A Team Approach*. New York : AMA Publications.
- O. W. Wilson et al.(1997), *Police Administration*(Boston, Massachusetts : McGraw Hill), 5th ed.
- Petak, William J.(1985). “Emergency Management :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pecial issue), 45. 3-7.
- Pickett, John H. & Barbara A. Block.(1991). “Day-to-Day Management.” In Thomas E. Dabek & Gerard J. Hoetmer(eds.), *Emergency Management :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C :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263-288.
- Sullivan, John L.(1997),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

ABSTRACT

The Study on the Private Security Employe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Park, Dong-Kyun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private security is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lients,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curity service and many countermeasure servic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In theses contexts, private security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educational program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clients.

Conclusionally, private security industry employers in Korea has not concerned with the import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by lack of recognition and has been passive about qualified guards. And the authorities supervising and the administrating the guards ha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and has neglected the training of the guards. In theses contexts, private security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educational program of emergency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clients.

Key Words : Emergency management, Private security, The guard-instructor system,
Educationand training